

동의를 작성 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!  
**가로주택정비사업 안내**

**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?**

-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토지등소유자(조합)가 사업의 주체이며 사업계획수립 등 전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는 사업

※ 가로주택정비사업 동의서 작성 전 아래 내용을 **꼭**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- 검인동의서 작성 단계부터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는 등 **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허위 과장광고**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
- 사업시행계획서에 제시된 조합원 추정분담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**향후 추가분담금 발생 가능**
-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이 등록된 자만 가로주택정비사업 업무의 대행 등이 가능하며 무자격업체 또는 개인과 계약으로 문제 발생 시 모든 피해는 주민(조합원)이 받음
-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는 **최초 동의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 가능** (30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조합설립을 위한 **창립 총회 이후에는 철회불가**)
- 필요시 사업주체의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판단을 위한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을 정비지원기구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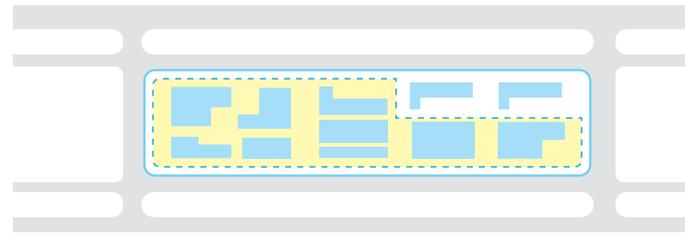
**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및 절차**



**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**

- 도시계획도로 또는 「건축법」에 따른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㎡ 미만의 지역
- 4m 초과 통과도로가 없는 지역
- ※ 일부가 광장, 공원, 녹지, 하천, 공공공지 또는 공용주차장에 접한 경우 가능

**1 사업시행구역**



□ 가로구역 전부    ■ 또는 일부

**2 주민 동의율**

- 토지등소유자 **80% 이상**
- 사업대상지 토지면적 **2/3 이상**
-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은 각 동별 구분소유자 **과반수**

**3 주택 수**

- 단독주택 **10호 이상** 또는 공동주택 **20호 이상** 또는
- 단독+공동 **20채 이상**

**4 주택노후도**

- 노후불량주택 **2/3 이상**
- 노후불량주택 : 안전사고의 위험 있는 건축물, 도 조례로 정함



**정비사업 절차 간소화**

- 구역지정 및 추진위 단계 생략
- 사업기간 단축으로 인한 사업비 절감



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45(장천동)  
 순천시청 별관 6층 건축과 공동주택허가팀  
 (TEL 061-749-6380 FAX 061-749-4669)

